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719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재산세등 93,630,100원의 부과



처분 중 34,269,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4. ○○시 B 지상에 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정비시설, 검사장) 용도의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6. 10. 18.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7층까지를 임차하여 'D 서비스센터'라는 상호로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E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수리업에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건물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된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5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93,630,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12.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동차수리 및 세차업(분류코드 9521)이 자동차 및 자



동차부품 판매업체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해당할 경우 이는 도매 및 소매업인 자동차판매업(분류코드 451)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판매업자인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BMW 자동차 판매 및 부품 판매활동에 부수하여 자동차 수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8호는 상위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중과세율 대상을 제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공장'으로 한정하여 위임하였음에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자동차 정비·수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재산세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수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건물이 '공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전체 면적의 70%)까지도 '공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의미와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자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자동차 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곧바로 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고 'D 서비스센터'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자동차수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와 함께,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취지와 목적,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참조).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8호에서 정한 '자동차 정비·수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상위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장'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신설·증설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일반세율의 5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7조는 공장의 범위를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정의가 지방세법상 공장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각 관계 및 법령 입법체계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103조 제2항에서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주거지역 등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그 밖의 건축물'의 2배의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규정과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면서도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제조시설용'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그 위임을 받은 [별표 2]에서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하는 건축물이 포함되도록 한 점, 그 밖에 위 규정들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에는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을 포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8호가 지방세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위임의 한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공장'의 사전적 의미는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이고, '수리'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 '정비'는 '기계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함'의 의미로서, 자동차 정비·수리업이 '기계설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활동'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정비소 내지 자동차 수리소가 공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세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하되,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하고(제1항),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제2항).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공장'에 해당한다면 산업집적법상 '공장'에도 당연히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시형 공장'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위 법의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정의가 지방세법상 공장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자동차 종합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 정비·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형 공장'의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장'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이고, 주된 시설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 이상이고 그 외 부수시설이 나머지 30%



이하로 사용이 제한된 주차전용건축물로, 주된 시설인 주차장을 부속 시설인 자동차관련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주차장과 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 주차장 부분은 정비할 예정이거나 정비를 완료한 차량의 대기장소 및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비소의 고객이나 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자동차 정비소는 수리를 하거나 할 예정인 자동차를 놓아 둘 장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부분은 자동차 정비소의 부대시설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08

판사 ○○○

판사 ○○○



별지1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순 번	과세대상	과세표준	재산세등 과세내역 (단위: 원)			
			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1	B에 있는 F호	118,775,764	2,177,570	1,650,980	229,660	296,930
2	B에 있는 G호	540,110,683	10,098,660	7,507,530	1,240,860	1,350,270
3	B에 있는 H호	584,297,560	10,929,380	8,121,730	1,346,910	1,460,740
4	B에 있는 I호	141,394,792	2,602,800	1,965,380	283,940	353,480
5	B에 있는 J호	529,828,376	9,905,360	7,364,610	1,216,180	1,324,570
6	B에 있는 K호	210,382,480	3,608,600	2,681,670	449,510	477,420
7	B에 있는 L호	557,977,112	10,434,560	7,755,880	1,283,740	1,394,940
8	B에 있는 M호	182,682,192	3,379,010	2,539,280	383,030	456,700
9	B에 있는 N호	557,977,112	10,434,560	7,755,880	1,283,740	1,394,940
10	B에 있는 O호	192,509,240	3,272,600	2,433,240	406,620	432,740
11	B에 있는 P호	921,173,853	17,262,650	12,804,310	2,155,410	2,302,930
12	B에 있는 지하 F호	215,617,248	2,300,090	1,582,000	462,070	256,020
13	B에 있는 지하 G호	392,831,824	7,224,260	5,372,390	887,390	964,480
합 계		5,145,558,236	93,630,100	69,534,880	11,629,060	12,466,160

끝.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열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
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2. 건축물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
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
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
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다.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
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
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건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



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6. 하남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